

#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

**진정인** A 외 571인

**진정인들의 대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피진정인** 경기도교육감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진정하오니, 피진정인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확인, 제도개선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취지

1. 피진정인이 2023. 11. 6., 2023. 11. 25., 2024. 2. 22.에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열람 제한을 압박한 행위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확인한다.
2. 피진정인은 민원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 마련, 교직원에 대한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진정내용

## 1. 사건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 1) 진정인 A는 경기도 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공문을 통해 학교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처리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진정인 A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교사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진정인 A 외 157명은 교사, 진정인 B 외 11명은 학생, 진정인 C 외 92명은 학부모로서 모두 피진정인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열람 제한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차별없이 교육을 받고 수업을 할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입니다. 진정인 D 외 308명은 피진정인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열람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향유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입니다.
- 3) 진정인들의 대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동으로 대응을 진행 중인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 4) 피진정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지역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경기도 각 학교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열람 제한을 공문으로 요구한 이입니다.

## 나. 진정의 배경

- 1) 2023. 9. 19. 보건문학 & 인문연구소 대표는 각 지역 학교 도서관들에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 협조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유해 도서 148권을 어린이, 청소년으로부터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대표가 유해 도서로 지정한 책들은 모두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들입니다.
- 2) 이후 피진정인은 2023. 11. 6. 경기도 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23. 11. 15. 피진정인은 재차 공문을 보내 “성교육도서의 적절성을 교육적 측면에서 자체 판단”하고, 부적절 도서는 열람 제한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3) 그리고 2024. 2. 22. 피진정인은 재차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공문을 보내어, ①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기타 운영현황, ②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 공문에 첨부된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작성 서식을 보면, ‘2023학년도 성교육도서 관리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 결과로 ‘재적 및 폐기 도서 수’, ‘열람 제한 도서 수’를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    |    |    |                  |      |                     |                   |                  |       |  |                         |               |                             |  |
|---|----|----|----|------------------|------|---------------------|-------------------|------------------|-------|--|-------------------------|---------------|-----------------------------|--|
|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br>※ 숫자로 기재(타위원회로 운영할 경우도 작성) |    |    |    |                  |      |                     |                   |                  |       | 2023학년도 성교육도서 관리 여부<br>※ 숫자로 기재(2023.3.1~2024.2.29.) |                         |               |                             |  |
| 내부위원  |    |    |    |                  | 외부위원 |                     |                   |                  |       | 계<br>(수식<br>있음)                                      | 성교육도서 관련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               |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 해당교는 시트2 작성) |  |
| 교장  | 교감 | 교사 | 학생 | 소계<br>(수식<br>있음) | 학부모  | 외부기관<br>사서·<br>사서교사 | 관련<br>전문가<br>(기타) | 소계<br>(수식<br>있음) | 운영 횟수 |  | 제적 및 폐기<br>도서 수         | 열람 제한<br>도서 수 |                             |  |
| 0   | 1  | 3  | 1  | 5                | 2    | 1                   | 1                 | 4                | 9     | 0  | 0                       | 0             |                             |  |
| 0   | 1  | 4  | 0  | 5                | 1    | 1                   | 1                 | 3                | 8     | 1  | 3                       | 2             |                             |  |

**<피진정인 2024. 2. 22.자 공문 첨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 4) 이렇게 피진정인,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속적인 요구에 각급 학교에서는 잇따라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였습니다. **2024. 5. 7.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3. 부터 2024. 2. 29.까지 1년 간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습니다. 이들 도서는 대부분 위 보건문학 & 인문연구소 등이 유해 도서로 지정한 140여권의 도서들로 확인되었습니다.**
- 5) 한편 보건문학 & 인문연구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 도서로 지정한 140여권의 책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4. 4. 19.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청구한 68권 중 67권이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다고 의결했고, 유해 도서로 결정된 1권에 대해서도 출판사 측에서 재심의 신청을 하여 다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sup>1</sup>

<sup>1</sup>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에 대한 문예출판사 공식 입장문  
[https://moonye.com/sub/sub03\\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8&sk=&sw=&offset=&category=](https://moonye.com/sub/sub03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8&sk=&sw=&offset=&category=)

## 2. 피진정인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 가. 학생, 학부모의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 1)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5조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이러한 헌법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누구나 차별과 편견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차별없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더불어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과 편견이 담기지 않은 내용을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 4)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보건문학 & 인문연구소의 민원을 받고 이에 사실상 동조하여 3차례 공문을 보내며 각급 학교에 성교육 도서를 열람 제한,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진정인은 공문에서 각급 학교가 자체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2023. 11. 6. 공문에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도서를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불임 자료로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 등이 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 등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는 등, 사실상 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를 압박하였습니다.**

- 5) 그리고 이러한 압박의 결과 2,500여권의 도서가 ‘유해 도서’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B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은 해당 도서들을 통해 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배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따라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 6)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진정인의 조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동시에 진정한 C를 비롯한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 **나. 교사의 노동권 침해**

- 1)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교사의 학생교육권(수업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나,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은 교사 자신의 인격의 발현, 또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교사의 직무에 기초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수업권 자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108 결정 등 참조).
- 2) 그러나 수업권이 기본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즉 교육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헌법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 3)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어 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를 사실상 종용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진정인은 공문에서 교육목적에 적합할 것,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할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공문과 첨부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보건문학 & 인문연구소의 민원에 동조하여,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서 폐기하라는 압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유해도서’로 지정된 140여권에 포함된 도서들이 수천 권 폐기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 4) 결국 피진정인은 사실상 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를 압박하였습니다. **진정인 A와 같이 일부 거부한 교사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 목표에 부합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상급 기관의 문책과 계속되는 민원이 두려워 도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 A 등 교사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 **다.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민원에 대한 동조**

- 1) 피진정인이 공문을 보내어 폐기된 도서 2,500여권은 모두 성평등,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인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와 국내 도서 전문 단체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성교육 상식 사전>, <니 몸, 네 맘 얼마나 아니>,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도 포함되었습니다.**
- 2)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에서 각 회원국의 핵심적인 의무사항으로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하는 역량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sup>2</sup> 2020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5, 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청소년 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sup>3</sup>

3) 따라서 폐기된 2,500여권의 도서는 성평등,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들로서 유엔이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 도서들은 기본적 인권을 실현할 책무를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4)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2년 공립학교 담당 주정부기관인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한 보수 학부모단체 회의에 참가해 "반미국적, 반기독교적, 반유대교적" 도서 9권을 선정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이를 제거할 것을 명령한 것에 대해, “청원인(교육위원회)은 학교 도서관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량권은 협소하게 당파적이거나 정치적인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 청원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제거하여 피고(학생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거부했는지 여부는 청원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에 달려 있다. 지역 교육위원회는 단순히 책에 포함된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정치,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사상에 있어 ‘올바른 견해’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제거할 권한이 없다. 청원인의 결정에 그러한 의도가 결정적 이유였다면 이는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건문학 &

---

<sup>2</sup>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2 (2016)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GC/22

<sup>3</sup>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인문연구소의 민원과 이에 사실상 동조하 피진정인의 결정에 미국의 사례와 같은 차별적 의도가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5) 결국 피진정인은 보건문학 & 인문연구소 등 보수 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공문을 보내어 도서들이 폐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민원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입니다.

###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책권고 요청

- 1) 이 사건은 단지 피진정인 하나의 행위, 또는 경기도 지역 내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청남도 등 여러 지역에서 보수단체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를 열람제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이에 동조에서 각 지역 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2) 2023. 9. 9.에는 충남도민들이 집단으로 충남도자사의 충남지역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도서 열람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성교육 도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경기 등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3)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1999년 발표한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 역시

“도서관들은 전문적인 고려, 그러나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입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도서관 자료들과 서비스의 선택과 유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도서관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 4) 그렇기에 이 사건과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권고 및 관련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직권으로 전국 각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의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 열람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11. 2. 154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인 경기도교육감의 업무상 과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보수단체의 혐오에 기반한 민원과 이에 동조, 또는 방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반적인 문제가 결합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구제를 요청합니다.

**2024. 6. 13.**

진정인 A 외 571명

진정인들의 대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귀 중**